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검토의견

가. 제출일자 : 1995년 10월 27일

나. 회부일자 : 1995년 10월 27일

3. 제안이유

○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증부지소의 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증부지소의 운영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직속기관 정원 11명 증원(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 인력)

.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2명, 지방소방교 4명, 지방소방사 4명

○ 사업소 정원 4명 증원(가축위생시험소 증부지소 인력)

. 지방가축위생연구사 2명, 지방수의주사보 2명

○ 이미 운영중인 정책보좌관 정원 중 기존의 6급이하 정원을 감축하여 한시정원으로 조정한 정원을 지침 변경에 따라 감축된 당초정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해당 조례의 부칙일부 수정

. 조례 2180호('95. 2. 17.)의 부칙 제3항의 한시정원 내역 중 본청 정책보좌관 3명을 삭제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제천소방서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설치에 따른 정원의 승인과 관련하여 현행조례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에 있어

직속기관 정원 949명을 960명으로하고, 사업소 376명을 380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과

한시정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본청의 정책보좌관 3명을 감축하여 당초대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와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의 시설이 완공됨과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코자 하는 것으로

. 제천소방서 매포파출소에는
  지방소방위 1명, 지방소방장 2명, 지방소방교 4명, 지방소방사 4명등 11명을 증원하여 직속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는 지방가축위생연구사 2명과 지방수의주사보 2명을 보강 4명을 증원 사업소 정원으로 하는 내용과
. 부칙조항에 한시정원으로 운용되어오던 본청 정책보좌관의 정원 3명을 감축하여 당초대로 환원하여 기능직정원(3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추진상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도청기구의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단편적인 정원조례의 부분적 개정은 심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첨 부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